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(신·구조문대비표)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제1조(목적) 이 훈령은 「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와 「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환급신청서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 환급신청등 ----------.	○ 조문 정비
제3조(업무분장) ① 환급심사(서면조사를 포함한다) 및 소요량 사전심사는 관할지세관의 환급심사과(환급심사과가 없는 세관은 납세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과	제3조(업무분장) ① ---------- 환급심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----	○ 조문 정비

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 이를 담당한다.	----------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, 「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」을 적용받는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경우에는 대상업체를 관리하는 본부세관의 종합심사부서에서 담당한다.	③ ---------- 「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」----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----------.	○ 관련 행정규칙명 등 조문 정비
④ 제3항에 따라 종합심사팀장이 소요량심사를 하는 경우로서 소요량산정과 관련하여 환급신청인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요량심사부서장에게 심사의 견을 조회할 수 있다. 다만 종합심사팀장이 소요량부서장에게	④ ----------. 다만, 종합심사팀장이 소요량심사부서장-	○ 조문 정비

의견을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.	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	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	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	
제4조(환급신청서 배부) 세관장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환급심사시스템(이하 “관세환급시스템”이라 한다)에 배부기준을 등록하여 환급신청서를 배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심사의 난이도 및 미결현황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배부할 수 있다.	제4조(환급등 신청서 배부) 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	○ 조문 정비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

2. 담당직원의 휴직·전보·휴가·출장 등으로 해당 환급신청서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	2. ---------- 환급등신청서----------	○ 조문 정비
제5조(심사원칙) ① (생 략)	제5조(심사원칙) ① (현행과 같음)	
②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 선별방법 등은 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」(이하 "환급심사훈령"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② ---------- 「관세국경 통합위험관리에 관한 훈령」 및 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」---------.	○ 관련 행정규칙명 정비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
제6조(환급후심사 대상의 선별 및 서류의 제출) ①·② (생 략)	제6조(환급후심사 대상의 선별 및 서류의 제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	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	③ ---------- ----------.	

1. 「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」 제11조에 따라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환급신청한 경우	1. 「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11조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환급신청한 경우	○ 관련 행정규칙명 등 조문 정비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	
3. 해당 업체에 대한 소요량심사 및 사후심사 결과 과다환급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	3. ---------- 소요량심사, 소요량 사전심사 ----------	○ 심사생략 사유 명확화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	
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환급 후심사 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환급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로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심사에 필	④ ---------- 경우, 환급등을 신청한 자에게 선별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-- 15일 --	○ 선별 후 처리기간 명확화, 서류제출기간 확대

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. 다만, 환급고시 제12조제2항에 따라 환급 후에 심사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근거하여 심사할 수 있다.	----------.	
⑤·⑥ (생 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	
제25조(적재허가신청서의 심사 및 허가서 발급) ①·② (생 략)	제25조(적재허가신청서의 심사 및 허가서 발급) ①·② (현행과 같음)	
③ 제1항제2호의 서류제출심사 대상 허가신청 건에 대하여 세관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와 전자문서로 전송된 내용에 대해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선(기)용품적재허가신청내용의 적정성	③ ---------- 선박(항공기)용품 적재허가 신청내용---	○ 알기쉬운 법률용어 반영 등 조문 정비

여부를 심사하여 허가하고, 그 내용을 전산등록하여야 한다.	---------- ----------.	
1. 해당 선박(항공기)의 승무원 수·선박(항공기)의 톤수·항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재허가 신청물품이 선(기)용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	1. ---------- ---------- 적재허가 신청물품이 선박(항공기)용품----------	○ 알기쉬운 법률용어 반영 등 조문 정비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	
3. 원양어업용 선용품 무환반출 확인서와 적재허가 신청물품의 일치 여부(원양어업용 물품의 경우)	3. ------- 선박용품 무상반출 ---------- ----------	○ 관련 행정규칙 변경 사항 반영
제31조(신청서류의 배부 및 심사의뢰) ①·② (생 략)	제31조(신청서류의 배부 및 심사의뢰) ①·② (현행과 같음)	
③ 관할지 세관장은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	③ 관할지세관장---------- ----------	○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부세관장에게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내역에 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할지 세관장은 접수한 서류 일체를 본부세관장에게 인계하고, 관련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------ 관할지세관장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	
1. 신청인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(AEO)인 경우	1. ------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----------	○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
2.·3. (생 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	
제32조(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소요량 사전심사(재심사를 포함한다)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	제32조(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등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	○ 인천세관 직제개편 등 반영

본부세관에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단서 신설>	---------- ---------- ---. 다만, 관할지 세관이 인천공항본부세관, 평택직할세관인 경우에는 인천본부세관 위원회에서 심의 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
② ~ ⑧ (생 략)	② ~ ⑧ (현행과 같음)	
제35조(재검토기한) 관세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35조(재검토기한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 2023년 7월 1일 --- ---------- ----- 12월 31일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	